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90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업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어업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별표)

라. 보조금 지원율을 실정에 맞게 반영(안 제6조)

○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100퍼센트 이내로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6,228백만원(2016년도 예산 확보계획)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3. ~ 10.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보조금””을 ““농어업보조금””으로, “농업”을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인(농가”를 “농어업인(농어가”로 “농업법인, 농업인단체”를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익발전”을 “농업발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제2호 중 “공익발전”을 “농업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9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한다.

제9조 본문과 각 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업인단체”를 “농어업인단체”로 “농업법인”을 “농어업법인”으로 하고,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법인은 5억원

제10조와 제11조제4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란 군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 7. (생 략) 8.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9. (생 략)	제2조(정의)-------------------------------- 1.“농어업보조금”--------------------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 2. ---------------------------- 농어업인(농어가-----------------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 3. ~ 7. (현행과 같음) 8. 농업발전---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3조에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6조(보조금 지원율) ---------- 1. ---------- 2. 농업발전---------- 3. ---------- ---------100퍼센트--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배부받은 금액을 계상한다. 1. 농업인은 7천만원 2.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제9조(총액제) ---------- ---------- ----------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인---- ----------농어업인------ ---------- 1. 농어업인------ 2. 농어업인단체------- 3. 농어업법인은 5억원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0조(일몰제)** ------**농어업인**----------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 3. (생 략)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 1. ~ 3. (생 략) 4. ---------- **농어업인**----------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10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지원 사업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 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0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농정시책사업에 군비보조금을 투입하여 보조사업 수행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세출	군비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소계(a)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세입	0						
	소계(b)						

3. 관련 의견 : 재원(거창군 자체예산)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